

[일련번호: 1]

# 경기도체육회

## 주 의 · 개 선 조 치

[제 목]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및 운영 부적정

[소 속 기 관] 성남시체육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성남시체육회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(정의)제6호와 대한체육회 「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」과 성남시체육회 「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」 등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사업을 운영하며 생활체육지도자 근무를 관리·감독하고 있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고용노동부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과 「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」에 따라 \*\*\*\*년부턴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안정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.

또한 대한체육회 「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」 제27조(담당업무)와 성남시체육회 「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」 제25조(복무관리)제3항에 따르면 지도자의 인사정보, 지도활동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및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·관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 되었다.

#### 가.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미이행

성남시체육회는 고용노동부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과 「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`\*\*.\*\*.\*\*.까지 하도록 독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다.

#### 나. (행정)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 미준수

성남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「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」에 따라 지방체육회 생활체육 업무에 필요한 경우 단체별 \*명 이내로 배치 할 수 있고 `\*\*년 \*월부터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\*명을 추가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\*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행정지원 인력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.

#### [조 치 사 항] 성남시체육회장은

정기종합감사에서 발견된 2가지 부적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미이행

고용노동부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과

「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이 조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성남시청 주무부서 및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`\*\*.\*\*.\*\*.까지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여 본회 ○○○○팀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주의)

#### 나. (행정)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 미준수

대한체육회「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」과 성남시체육회 「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」 제25조(복무관리)에 따라 행정지원 인력을 \*명 이내로 재배치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회 ○○○○팀으로 재배치한 행정지원 인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개선)

[일련번호: 2]

# 경기도체육회

## 주의조치

[제 목] 구매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

[소 속 기 관] 성남시체육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성남시체육회는 \*\*\*\*~\*\*\*\*년도 경기도체육회 ○○○○○○ 사업에 선정되어 성남시 내 학교운동부를 운영 중인 학교에 훈련용품을 지원 하는데 \*\*건(\*\*,\*\*,\*\*월)의 물품구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성남시체육회 「정관」과 「회계규정」 및 경기도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고 한다.) 「사업별 보조금 지침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한다.)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예규)」(이하 “계약집행기준”이라 한다.)등에 따라 수의분할 계약집행 기준에 맞게 분할계약을 금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성남시체육회는 \*\*\*\*~\*\*\*\*년도 체육진흥공모 훈련용품지원 사업운영에 있어 훈련용품 구매에 있어 학교에서 업체 견적서를 받아 개별 구매하는 등 분할계약을 실시하고 계약서를 기타 증빙서류를 대체하여 생략하는 등의 문제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.

\*\*\*\* 000000 훈련용품 지원에서 총 사업비 \*\*,\*\*\*천원 중 용품지원형으로 \*\*,\*\*\*천원을 지역 내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(0000, 000, 000, 000, 000)에 훈련용품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.

본회는 성남시체육회에 `\*\*,\*\*.\*\*.일자로 보조금 교부신청(00000-\*\*)을 받아 `\*\*,\*\*.\*\*.일자로 보조금을 교부(본회 00000-\*\*\*\*)하였고 `\*\*,\*\*.\*\*.일자에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였다.

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계약담당 기관이 받아야하는 견적서를 지원 받을 \*개 학교에서 업체를 통해 받아 제출된 견적서를 증빙으로 [표1]과 같이 보조금을 \*회로 분할하여 구매하였고, C용품업체는 \*건(\*\*,\*\*\*천원)의 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도 \*번으로 분할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.

\*\*\*\* 000000 훈련용품 지원에서 총 사업비 \*\*,\*\*\*천원을 학교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(0000, 0000, 000, 000)에 용품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.

본회는 성남시체육회에 `\*\*,\*\*.\*\*.일자로 보조금 교부신청(00000-\*\*\*\*)을 받아 `\*\*,\*\*.\*\*.일자로 보조금을 교부(본회 000000-\*\*\*\*)하였고 `\*\*,\*\*.\*\*.일자에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였다.

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계약담당 기관이 받아야하는 견적서를 지원 받을 \*개 학교에서 업체를 통해 받아 제출된 견적서를 증빙으로 [표1]와 같이 보조금을 \*회로 분할하여 구매하였고 사전에 자격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계약서를 생략하고 증빙서류로 대신하였다.

또한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추정금액<sup>1)</sup> 2천2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초과하는 경우는 공고를 내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경쟁하여야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\*\*,\*\*\*천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면서 업체를 분할하여 2천2백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하여 구매하였다.

1) 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제2조(정의)2호

\*\*\*\* 000000 훈련용품 지원에서 총 사업비 \*\*,\*\*\*천원을 학교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(000, 000, 000, 000, 0000)에 용품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.

본회는 성남시체육회에 `\*\*,\*\*.\*\*.\*\*\*일자로 보조금 교부신청(00000-\*\*\*\*)을 받아 `\*\*,\*\*.\*\*.\*\*\*일자로 보조금을 교부(본회 000000-\*\*\*\*)하였다.

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계약담당 기관이 받아야하는 견적서를 지원 받을 \*개 학교에서 업체를 통해 받아 제출된 견적서를 증빙으로 [표1]와 같이 보조금을 \*회로 분할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.

\*개 업체를 통해 계약하였지만 사격과 같은 특수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목임을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시기에 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.

**[표1] \*\*\*\*~\*\*\*\* 000000 훈련용품지원 계약현황**

사업명	집행액(원)	목적	지출일자	거래처	계약서 작성
**** 000000	*,***,***	농구(000)	**.*.*	A용품업체	미작성
	*,***,***	사격(0000)	**.*.*	B용품업체	미작성
	*,***,***	태권도(000)	**.*.**	C용품업체	미작성
	*,***,***	태권도(000)	**.*.**	C용품업체	미작성
	*,***,***	레슬링(000)	**.*.**	C용품업체	미작성
**** 000000	*,***,***	야구(000)	**.*.**	D용품업체	미작성
	*,***,***	태권도(000)	**.*.**	E용품업체	미작성
	*,***,***	력비(0000)	**.*.**	F용품업체	미작성
	*,***,***	야구(0000)	**.*.**	G용품업체	미작성
**** 000000	*,***,***	배구(000)	**.*.**	H용품업체	작성
	*,***,***	농구(000)	**.*.**	I용품업체	작성
	*,***,***	농구(000)	**.*.**	A용품업체	작성
	*,***,***	양궁(000)	**.*.**	J용품업체	작성
	*,***,***	사격(0000)	**.*.** **.*.*	K용품업체	작성

**[조 치 사 항] 성남시체육회장은**

성남시체육회 회계규정을 정비하고 회계담당자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으로 「지방계약법」 및 「계약집행기준」 등 관련 근거에 따라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분할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

[일련번호: 3]

#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

[제 목] 정관 개정 미흡

[소 속 기 관] 성남시체육회

[내 용]

## 1. 업무개요

성남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성남시체육회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, 정관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육회장과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.

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체육회 정관 제7조(권리와 의무)<sup>1)</sup> 및 제54조(정관의 변경)<sup>2)</sup>에 따르면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(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, 본회 「시·군체육회 규정」<sup>3)</sup>에 따라 정관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본회 「시·군체육회 규정」은 \*\*\*\*년 최초 제정되어 \*\*\*\*년 \*\*월까지 \*회 개정되었다가, \*\*\*\*년 \*\*월 \*\*일 지방체육회 특수법인 전환에 따라

1) 「성남시체육회 정관」 제7조(권리와 의무)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 
「경기도체육회 정관」 제8조(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)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.  
「대한체육회 정관」 제10조(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) ②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  
1. 체육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

2) 「성남시체육회 정관」 제54조(정관의 변경)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(시·군체육회 규정)에 따라 정관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3) 경기도체육회 「시·군체육회 규정」 제51조(정관의 제정 및 개정) ① 시·군체육회는 본회 시·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새로 제정 되었고 이후 \*\*\*\*년 \*월 \*\*일과 \*\*\*\*년 \*월 \*\*일에 두 차례 개정되었다. 그러나 체육회는 \*\*\*\*년 \*월 \*\*일 제정된 정관을 현재까지 개정 내역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.

더욱이 체육회는 정관 제54조(정관의 변경)제2항4)에 따라 본회에 정관 개정에 따른 검토 요청을 2회<sup>5)</sup>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.

### [조 치 사 항] 성남시체육회장은

체육회 정관 제7조, 제54조 및 본회 「시·군체육회 규정」 제51조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성남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관을 개정 후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개선)

---

4) 「성남시체육회 정관」 제54조(정관의 변경) 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평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체육회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5) 성남시체육회 00000-\*\*\*\*(\*\*\*\*.\*\*\*.\*\*) 「성남시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검토 협조 및 규정 개정 안내」  
경기도체육회 000000-\*\*\*\*(\*\*\*\*.\*\*\*.\*\*) 「성남시체육회 정관(개정) 검토의견 알림」  
성남시체육회 00000-\*\*\*\*(\*\*\*\*.\*\*\*.\*\*) 「성남시체육회 정관 개정 재검토 요청의 건」  
경기도체육회 00000-\*\*\*\*(\*\*\*\*.\*\*\*.\*\*) 「성남시체육회 정관 개정 검토의견 회신」

[일련번호: 4]

# 경 기 도 체 육 회

## 개 선 조 치

[제 목]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

[소 속 기 관] 성남시체육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성남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는 「성남시체육회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연맹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체육회는 정관 제38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에 따라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제 규정인 「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조(적용범위)에는 ① 학교체육위원회, ② 생활체육위원회, ③ 경기력향상위원회, ④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, ⑤ 여성체육위원회, ⑥ 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외의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하지만 감사기간 확인한 결과 체육회는 6개의 각종 위원회 중 『학교체육위원회』와 『경기력향상위원회』만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,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『생활체육위원회』와 스포츠클럽 육성의 진흥과 스포츠클럽

대회 활성화를 위한 『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』를 비롯한 『여성체육위원회』, 『체육정책위원회』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.

특히 『체육정책위원회』의 경우, 경기도체육회 「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로, 체육회는 「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18조(체육정책위원회)에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별도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구성·미운영 중이다.

### [조 치 사 항] 성남시체육회장은

정관 제38조(각종위원회의 설치) 및 「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한 이사회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. (개선)

[일련번호: 5]

# 경기도체육회

## 개선조치

[제 목] 경영공시 미이행

[소 속 기 관] 성남시체육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성남시체육회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성남시체육회 정관」(이하 '정관'이라 한다)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성남시체육회 정관 제58조(경영공시)에 의하면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공시 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 결과, 예산집행내역, 외부평가, 감사결과와 그 외 성남시체육회장이 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성남시체육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에 명시된 공시항목들을 게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\*\*\*\*년 \*\*월 \*\*일까지 성남시체육회의 홈페이지 내에 \*\*\*\*년도, \*\*\*\*년도의 세입·세출예산의 공시와 분기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공개하였을 뿐,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인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, 업무추진비를

제외한 예산집행내역, 외부평가,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.

**[조 치 사 항] 성남시체육회장은**

정관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(개선)